

횡계도시상세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9.

제 출 자 : 평 창



□ 제안사유

- 1998. 7. 6일자 강원도고시 제'98-145호로 결정하고 평창군고시 '98-258('98. 8.28)호로 지적고시된 횡계도시상세계획에 있어 횡계 지역을 「고원눈마을」의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코저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개성있는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상세계획구역의 결정면적 : 4개지구 348,487㎡
 1. 시가지조성사업지구
 - 가. 횡계1리구역(면사무소뒷편) : 133,440㎡
 - 나. 횡계8리구역(황태덕장지역) : 79,200㎡
 - 다. 오목구역(문화마을지구) : 56,857㎡
 2. 구획정리사업지구
 - 가. 횡계5리구역 : 78,990㎡

□ 계획내용 및 도면조서 : 별지조서첨부

□ 관계법령

- 도시계획법 제 20조의3(상세계획구역의 지정)

상세계획은 도지사가 상세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

(도지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권한 위임)

□ 참고사항

-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

- 기간 : '98. 8. 21 - 9.5

- 방법 : 신문공고2회 (도민일보, 강원일보)

- 주민공청회

- 일시 : '98. 8. 28 14:00

- 도암면사무소 회의실

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번호 25

제출년월일 : 1998.10.

제 출 자 : 이경진의원의외6명

1. 제안이유

-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을 위하여 '98조직개편시 계제가 폐지됨은 물론 평창군의회사무과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을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하부조직인 의사계를 삭제하고 의사계의 업무분장을 의회사무과로 조정
-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전문위원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별정직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직제규칙상 전문위원 직급을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나. 관계부처 승인 :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의회사무과규칙 제 호

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의사계 및 전문위원"을 "전문위원"으로 한다

제3조(의사계)를 제3조(의회사무과)로 하고, 제3조제1항을 삭제하며,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"의사계"를 "의회사무과"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4조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 <생략></p> <p>제2조(하부조직)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.</u></p> <p>제3조(의사계) ① 의사계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.</p> <p>② 의사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11호. <생략>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</p> <p>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</p>	<p>제1조 <현행과 같음></p> <p>제2조(하부조직)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전문위원을 둔다</u></p> <p><삭제></p> <p>제3조(의회사무과)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11호 <현행과 같음></p> <p><삭제>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</p>